

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





목 차

1

노인과 인권

2

노인권리보호지침

3

노인학대의 정의

4

노인학대의 유형

5

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처벌규정

6

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



1. 노인과 인권



첫째 : 인권이란?

- 인간이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권리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

둘째 : 노인인권이란?
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

셋째 : 인권실천이란?

- 연령,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
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복이 필요합니다.

더 볼의 어르신과 종사자의 인권은 모두 보장 받아야 합니다!!!

2. 노인권리 보호지침



-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-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⑥ 통신 자유에 대한 권리
- ⑦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⑧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⑨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에 자유에 대한 권리
- ⑩ 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

3. 노인학대의 정의



노인에 대하여 **신체적, 정신적, 성적, 폭력**
및 **경제적**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**방임** 하는 것을 말한다.

[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]

4. 노인학대의 유형

신체적 학대

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및 고통과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

- ① 주먹으로 때린다.
- ② 밀어서 넘어뜨린다.
- ③ 침대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.
- ④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.
- ⑤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.
- ⑥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. 또는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.
- ⑦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.

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- ① 노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다.
- ② 말이나 행동을 신속적으로 무시한다.
- ③ 존대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.
- ④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.
- 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.

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

- 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.
- ②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.
- ③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.

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
경제적 착취 및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등
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

- ①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.
- ②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.
- ③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.



방임

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로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- 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의·식·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②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르신에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③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어르신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④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[자기방임]

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①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.
- ②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.
- ③ 인지기능을 상실한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.
- ④ 낯선 장소에 버린다.



5. 노인학대 신고방법



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

신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
알게 된 때에는 즉시

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
신고하여야 한다.

만약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
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
과태료를 부과한다.



노인 학대행위자 정의



노인학대 행위자란 ?

노인복지법 제39조의9 [금지행위]에
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
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,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
판정된 자.



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



노인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[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]	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2 [벌칙]
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[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]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복지법55조의3[벌칙] (폭행, 성폭력 등 유기·방임·구걸)
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·성희롱 등의 행위 [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2호]	
자신의 보호·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[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3호]	
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[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4호]	





학대행위자 및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

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[제39조의9 제5호]	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[노인복지법55조의4]
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[제39조의 11]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그 업무를 방해한 자	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[노인복지법55조의3]

8. 노인학대 **예방** 행동지침



-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- 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.
-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,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.
-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.
-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


감사합니다.



노인학대.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

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

노인학대신고의무자 : 의료인, 노인복지시설 직원, 장애인관련 모든직원, 사회복지 상담원

<노인학대 유형>

신체적학대 - 물리적인 힘,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,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정서적학대 - 비난, 모욕,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

경제적학대 -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.

성적학대 -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,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.

방임 -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,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,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.
(필요한 생활비, 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)

자기방임 -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.

유기 -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.

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

-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립니다.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합니다.
- 노인학대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함께 합니다.
-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있는지 살핍니다.
-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1577-1389로 신고합니다.
- 노인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기타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.

노인학대 신고 · 상담전화



1577-1389